

서울특별시 노동자복지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의안번호	532
------	-----

2019. 4. 26.
기획경제위원회

I . 심사경과

가. 발의일자 및 발의자 : 2019년 3월 29일, 이광호 의원

나. 회부일자 : 2019년 4월 3일

다. 상정결과 :

【서울특별시의회 제286회 임시회】

-제2차 기획경제위원회(2019.4.26.)상정, 제안설명, 검토
보고, 질의 및 답변, 의결(원안가결)

II . 제안설명의 요지(이광호 의원)

1. 제안이유

가. 노동자복지시설 중 전태일 노동복합시설은 노동권익 활동 및 비
조직 노동자·단체의 활동을 위해 시민들에게 개방될 예정인 바

목적에 맞는 사용료 기준을 정하고자 함

나. 자치구 노동복지시설은 자치구 개별 조례로 설치·운영됨에 따라 지역별 편중, 종사자 처우 및 지원서비스 등의 형평성 문제 등 한계가 있어, 시민 노동권익 보호 형평성 확보를 위해 시립 노동자 종합지원센터를 설립·운영함으로써 보완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사용료의 부과·징수 근거 및 사용료 기준 추가(안 제8조 및 별표2)

나. 서울특별시 노동자 종합지원센터 명칭 및 기능 추가(안 별표1)

Ⅲ. 검토보고 요지 (수석전문위원 강상원)

가. 개정안의 개요

- 개정안은 전태일 노동복합시설 내 노동허브의 사용료 기준을 목적에 맞게 규정하고, 서울시 노동자 종합지원센터의 설치·운영 근거를 신설하려는 것임.

나. 전태일 노동복합시설 사용료 규정(안 제8조, 별표2 신설)

- 서울시는 한국 노동운동의 역사를 보여주는 전시공간과 노동자 지원 시설이 집약된 “아름다운 청년 전태일 기념관(노동복합시설)”을 조성하고 4월말 정식 개관을 앞두고 있음.

〈전태일 기념관 개요〉

- ▶ 위치 : 종로구 청계천로 105 (관수동 152-1)
- ▶ 운영방식 : 민간위탁
- ▶ 수탁기관 : (재)전태일재단
- ▶ 개관일 : 2019년 4월 30일 예정
- ▶ 규모 및 층별용도 : 지상6층 / 연면적 1,916.15㎡(토지 553.1㎡)

구분	면적	입주계획	
1층	392.96㎡	전태일 기념관	수장고, 주차장, 기계실 등
2층	369.86㎡		공연장, 사무공간
3층	409.09㎡		전시실
4층	409.09㎡	노동 허브	
5층	266.08㎡	서울노동권익센터	
6층	70.10㎡	사무 및 휴게공간	

- 4층에 위치하는 노동허브(409.09 m^2)는 노동권의 활동 및 비조직 노동자와 단체의 활동을 위한 공간으로 사용되며, 공유재산 관련 법령에 따른 사용료는 입주단체 당 월 115만원(55,805원/ m^2) 수준임[참고자료1].
- 개정안은 산출된 사용료가 노동자의 권익을 보호하고 노동단체를 위한 공간을 제공하는 시설의 취지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판단해, 유사 사례를 참조해 1 m^2 당 월 5,000원의 사용료를 책정하였음.
- 서울시를 기반으로 활동하는 노동단체들의 지원 공간을 당사자 단체들이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적정한 사용료를 적용해야할 당위성은 인정됨.

〈서울시 유사 사용공간 사용료〉

- ▶ 인생이모작지원시설 창업·창직 지원공간 사용료 : 월 5,000원/ m^2
 - 「서울특별시 장년층 인생이모작 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보증금 1백만원, 관리비 별도
- ▶ 청년청 입주공간 사용료 : 월 3,655원(연간 43,860원)/ m^2
 - 「서울특별시 청년 기본조례」, 공유재산 사용료 산정방식에 따름. 보증금 없음, 관리비 : 2,333원/ m^2)

- 다만 서울시가 전태일 노동복합시설과 같은 행정재산의 사용·수익을 허가할 경우에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과 같은 법 시행령에 따라 요율과 산출범위가 정해져 있음.
- 시행령에서는 다른 법령에 따로 정하지 않는 한, 해당 재산평정가격의 연 1천분의 10 이상의 범위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하고 있음1).

- 법령의 위임을 받은 「서울특별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 조례」에서는 대부료율을 해당 재산평정가격의 1천분의 50 이상으로 정하고, 예외적으로 공용·공공용인 경우에 한해 1천분의 25 이상으로 허용하고 있음.
- 다만 다른 조례에서 별도로 정할 경우는 이에 따르도록 하고 있으나²⁾, 이 경우에도 공유재산 관계 법령의 사용료율(대부료율) 위임 범위를 벗어날 수는 없음.
- 그러나 개정안은 조례로 재산평정가격의 1% 미만으로 사용료를 따로 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지방자치법」상 조례의 제·개정 허용 범위³⁾를 이탈하는 등 법률우위의 원칙을 훼손할 수 있어 신중한 법리적 판단이 요구됨.
- 이에 따라 조례를 통한 공유재산의 별도 사용료 규정 가능 여부에 대해 법률자문 결과, 불가능하다는 의견이 다수임.

1) 제14조(사용료) ① 법 제22조제1항에 따른 연간 사용료는 시가(時價)를 반영한 해당 재산 평정가격(評定價格)의 연 1천분의 10 이상의 범위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되, 월할(月割) 또는 일할(日割)로 계산할 수 있다. 다만, 다른 법령에서 행정재산의 사용료에 대하여 특별한 규정을 두고 있는 경우에는 그 법령에 따른다.

2) 제26조(대부료의 요율) ① 영 제31조에 따른 연간 대부료의 요율은 이 조례또는 다른 조례에서 별도로 규정하고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해당 재산평정가격의 1,000분의 50 이상으로 하며, 공유림 등을 광업·채석을 목적으로 하는 대부의 경우에는 채광물 가격과 지형변경으로 인하여 장래 산림으로 이용하지 못하는 구역의 입목, 임산물 가격을 대부료에 추가하여 징수한다.

3) 「지방자치법」 제22조(조례)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의 범위 안에서 그 사무에 관하여 조례를 제정할 수 있다. 다만, 주민의 권리 제한 또는 의무 부과에 관한 사항이나 벌칙을 정할 때에는 법률의 위임이 있어야 한다.

〈법률자문 결과〉

	갑	을	병
자문 결과	불가능	가능	불가능
자문 내용	<p>공유재산법에 사용료 감면에 대한 근거 규정이 존재하지 않는다면, 사안의 <u>조례 제정</u>이나 <u>사용료 감면은 허용</u>되지 않음.</p>	<p>해당 조례는 수익적인 조례이며, 법령의 목적과 효과를 저해하는 바가 없고 법령과 조례의 목적이 동일한 것이라고 할지라도 각 지방자치단체가 그 지방의 실정에 맞게 별도로 노동시설의 취지에 부합하는 사용료를 부과하고자 하는 것인바 조례가 법령에 위반된다고 볼 여지가 적은 것으로 판단되며, 따라서 <u>별도의 사용료를 규정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됨.</u></p>	<p>공유재산법이 지방자치단체의 사용료 징수를 기속행위로 규정하고 있으면서(제22조) 감면은 재량행위로서 허용하고 있는 점(제24조), 공유재산법 및 그 시행령에서 행정재산의 연간 사용료를 임의로 정할 수 있도록 조례에 위임하지 않고 그 하한을 “시가를 반영한 해당 재산 평정가격의 연 1천분의 10”으로 명시하고 있는 점을 감안하면, <u>조례에서 그 보다 적은 사용료를 규정하는 것은 위법한 것으로 보임.</u></p>

다. 서울시 노동복지시설에 노동자 종합지원센터 추가 (안 별표1)

- 서울시는 노동자들의 복지 향상과 인식 개선을 위해 서울 노동권익센터와 자치구 노동복지센터를 운영 중에 있음.
- 자치구 노동복지센터는 노동복지센터, 근로자복지센터, 노동권익센터 등 다양한 명칭을 가지고 있어, 이를 “노동자 종합지원센터”로 일원화할 계획임.

- 또한 노동정책의 일관성·실효성 제고 및 시민 점점 서비스 확대를 위해 권역별 노동자 종합지원센터를 추가 설립할 예정임.
- 이에 서울시 노동복지시설에 “서울시 노동자 종합지원센터”를 추가하여 권역별 센터의 설치·운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으로 개정의 취지는 타당한 것으로 보임.
- 다만 자치구 센터(舊 노동복지센터)⁴⁾와 서울시가 위탁 운영할 권역별 센터가 동일한 명칭을 사용하고 있어 혼란을 야기할 수 있으므로, 서울시 노동정책의 체계성·일관성 확보를 위해 두 센터간의 명칭 정리가 필요함.

〈서울시 노동자 종합지원센터 체계〉

자치구 노동자 종합지원센터	권역별 노동자 종합지원센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성동/서대문/구로/노원/성북/강서/광진/관악/양천/강동 등 10개소 운영 중 - 중구/중랑구 개관예정 - 2019년 3개소 추가 조성 예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산업시설 집적지, 이용자 편익 등 고려 - 하반기 2개소 조성 예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자치구 개별 조례에 따라 설치·운영 - 서울시가 운영비 등 일부 보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개정안을 통한 설치·운영 근거 마련 - 서울시 예산을 통한 위탁운영 예정

4) 자치구 센터는 조례 제7조(자치구 노동복지시설의 지원)에 근거하여 서울시가 운영에 필요한 경비 등 일부를 보조 중임.

IV. 질의 및 답변요지 : 「생략」

V. 심사결과 : 원안가결

(재적위원 12명, 참석위원 8명, 전원찬성)

VII. 소수의견 요지 : 「없음」

VIII. 기타 필요한 사항 : 「없음」

서울특별시 노동자복지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광호 의원 (대표) 발의)

의안 번호	532
----------	-----

발의년월일 : 2019년 3월 29일
발 의 자 : 이광호 의원 (1명)
찬 성 자 : 이광성, 최기찬, 김경우, 이병도,
김용연, 정진술, 이승미, 이은주,
채유미, 이세열, 최정순, 이현찬,
김동식 의원 (13명)

1. 제안이유

- 노동자복지시설 중 전태일 노동복합시설은 노동권익 활동 및 비조직 노동자·단체의 활동을 위해 시민들에게 개방될 예정인 바 목적에 맞는 사용료 기준을 정하고자 함
- 자치구 노동복지시설은 자치구 개별 조례로 설치·운영됨에 따라 지역별 편중, 종사자 처우 및 지원서비스 등의 형평성 문제 등 한계가 있어, 시민 노동권익 보호 형평성 확보를 위해 시립 노동자 종합지원센터를 설립·운영함으로써 보완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가. 사용료의 부과·징수 근거 및 사용료 기준 추가(안 제8조 및 별표2)
- 나. 서울특별시 노동자 종합지원센터 명칭 및 기능 추가(안 제3조 별표1 : 서울특별시노동자복지시설 명칭·위치 및 기능)

3. 참고사항

- 가. 관계법령 : 「근로복지기본법」,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 나. 예산조치 :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참조
- 다. 기 타 : 신·구조문 대비표 참조

서울특별시 노동자복지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노동자복지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 중 “별표와”를 “별표1과”로 한다.

제8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8조(사용료의 부과·징수) 복지시설을 사용하는 사람에게 별표2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사용료 등을 부과·징수할 수 있다.

[별표]를 [별표1]로 하고, 다음과 같이 한다.

서울특별시 노동복지시설 명칭 및 기능(제3조 관련)

명 칭	기 능
서울특별시 노동자복지관	노동자 복지증진
서울특별시 강북노동자복지관	노동자 복지증진
서울노동권익센터	노동자 복지증진 및 권익보호
전태일 노동복합시설	노동자 복지증진 및 권익보호
서울특별시 노동자 종합지원센터	노동자 복지증진 및 권익보호

[별표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전태일 노동복합시설 사용료(제8조 관련)

시설명	m ² 당 사용료(원)	사용기간	비 고
노동허브	5,000	1개월	보증금 별도 관리비 별도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제3조(설치·운영) 이 조례에 따라 설치·운영하는 복지시설의 명칭 및 기능은 <u>별표와</u> 같다.</p> <p style="text-align: center;">〈 신 설 〉</p> <p>[별표] 서울특별시노동자복지시설 명칭·위치 및 기능(제3조 관련)</p> <table border="1" style="width: 100%; border-collapse: collapse; margin-top: 10px;"> <thead> <tr> <th style="text-align: center;">명 칭</th> <th style="text-align: center;">기 능</th> </tr> </thead> <tbody> <tr> <td style="text-align: center;">서울특별시 노동자복지관</td> <td style="text-align: center;">노동자 복지증진</td> </tr> <tr> <td style="text-align: center;">서울특별시 강북노동자복지관</td> <td style="text-align: center;">노동자 복지증진</td> </tr> <tr> <td style="text-align: center;">서울노동권익센터</td> <td style="text-align: center;">노동자 복지증진 및 권익보호</td> </tr> <tr> <td style="text-align: center;">전태일 노동복합시설</td> <td style="text-align: center;">노동자 복지증진 및 권익보호</td> </tr> <tr> <td style="text-align: center;">〈 신 설 〉</td> <td style="text-align: center;">〈 신 설 〉</td> </tr> </tbody> </table> <p style="text-align: center; margin-top: 10px;">〈 신 설 〉</p>	명 칭	기 능	서울특별시 노동자복지관	노동자 복지증진	서울특별시 강북노동자복지관	노동자 복지증진	서울노동권익센터	노동자 복지증진 및 권익보호	전태일 노동복합시설	노동자 복지증진 및 권익보호	〈 신 설 〉	〈 신 설 〉	<p>제3조(설치·운영) ----- ----- <u>별표1과</u> --.</p> <p>제8조(사용료의 부과·징수) 복지시설을 사용하는 사람에게 <u>별표2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사용료 등을 부과·징수할 수 있다.</u></p> <p>[별표1] 서울특별시노동자복지시설 명칭 및 기능(제3조 관련)</p> <table border="1" style="width: 100%; border-collapse: collapse; margin-top: 10px;"> <thead> <tr> <th style="text-align: center;">명 칭</th> <th style="text-align: center;">기 능</th> </tr> </thead> <tbody> <tr> <td style="text-align: center;">서울특별시 노동자복지관</td> <td style="text-align: center;">노동자 복지증진</td> </tr> <tr> <td style="text-align: center;">서울특별시 강북노동자복지관</td> <td style="text-align: center;">노동자 복지증진</td> </tr> <tr> <td style="text-align: center;">서울노동권익센터</td> <td style="text-align: center;">노동자 복지증진 및 권익보호</td> </tr> <tr> <td style="text-align: center;">전태일 노동복합시설</td> <td style="text-align: center;">노동자 복지증진 및 권익보호</td> </tr> <tr> <td style="text-align: center;">서울특별시 노동자 종합지원센터</td> <td style="text-align: center;"><u>노동자 복지증진 및 권익보호</u></td> </tr> </tbody> </table> <p>[별표2]전태일 노동복합시설 사용료 (제8조 관련)</p> <table border="1" style="width: 100%; border-collapse: collapse; margin-top: 10px;"> <thead> <tr> <th style="text-align: center;">시설명</th> <th style="text-align: center;">㎡당 사용료(원)</th> <th style="text-align: center;">사용기 간</th> <th style="text-align: center;">비 고</th> </tr> </thead> <tbody> <tr> <td style="text-align: center;"><u>노동허브</u></td> <td style="text-align: center;"><u>5,000</u></td> <td style="text-align: center;"><u>1개월</u></td> <td style="text-align: center;"><u>보증금 별도 관리비 별도</u></td> </tr> </tbody> </table>	명 칭	기 능	서울특별시 노동자복지관	노동자 복지증진	서울특별시 강북노동자복지관	노동자 복지증진	서울노동권익센터	노동자 복지증진 및 권익보호	전태일 노동복합시설	노동자 복지증진 및 권익보호	서울특별시 노동자 종합지원센터	<u>노동자 복지증진 및 권익보호</u>	시설명	㎡당 사용료(원)	사용기 간	비 고	<u>노동허브</u>	<u>5,000</u>	<u>1개월</u>	<u>보증금 별도 관리비 별도</u>
명 칭	기 능																																
서울특별시 노동자복지관	노동자 복지증진																																
서울특별시 강북노동자복지관	노동자 복지증진																																
서울노동권익센터	노동자 복지증진 및 권익보호																																
전태일 노동복합시설	노동자 복지증진 및 권익보호																																
〈 신 설 〉	〈 신 설 〉																																
명 칭	기 능																																
서울특별시 노동자복지관	노동자 복지증진																																
서울특별시 강북노동자복지관	노동자 복지증진																																
서울노동권익센터	노동자 복지증진 및 권익보호																																
전태일 노동복합시설	노동자 복지증진 및 권익보호																																
서울특별시 노동자 종합지원센터	<u>노동자 복지증진 및 권익보호</u>																																
시설명	㎡당 사용료(원)	사용기 간	비 고																														
<u>노동허브</u>	<u>5,000</u>	<u>1개월</u>	<u>보증금 별도 관리비 별도</u>																														

○ **사용료 감면액** = $\sum_{i=1}^5 (\text{사용료감면})_i$

i = 비용추계 연차(2020년~2024년)

- **연간 사용료 감면액** ≒ 75,876천원

≒ 51천원 × 123.98m² × 12개월

▸ m²당 1개월 사용료 감면액 = 51천원

= 56천원 - 5천원

※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기준 m²당 1개월 사용료 = 56천원

※ 노동허브 면적 123.98m²

〈사용료 감면 비용〉

(단위 : 천원)

구 분	1차년도 (2020)	2차년도 (2021)	3차년도 (2022)	4차년도 (2023)	5차년도 (2024)	합 계
사용료 감면액(제8조)	75,876	75,876	75,876	75,876	75,876	379,380

주 : 1. 물가상승률 미반영
2. 서울시 노동정책담당관 자료를 사용하여 추계

4. 작성자

시의회사무처 예산정책담당관

담 당 관 남승우

정책조사팀장 여차민

예산분석관 이정수

☎ 02-2180-7942

e-mail : intezer@seoul.go.kr